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무 잡학지식



Mr. 물류

안녕하십니까, Mr. 물류입니다!

다음 달 3월 9일에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달은 법정공휴일인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근태 처리 등 노무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직원 근태처리 등 노무 관리

1. 근무하지 않을 경우, 임금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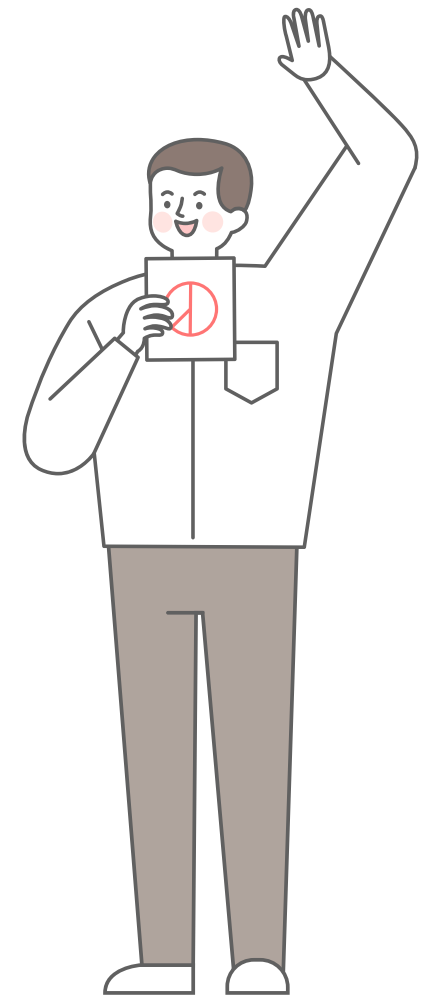
- 정상 근무일인 경우 : **유급휴일** 처리
- 유급 주휴일인 경우 : **하나의 휴일만 인정**
- 비번일 또는 무급 휴(무)일인 경우 : **무급 처리 가능**

2. 근무하는 경우, 임금처리

- **휴일근로 해당**(통상임금 50% 가산 적용)
- **휴일 사전 대체 가능**(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必)

3. 기타 사항

- 교대근로 익일 업무시 : **근무 시작일 연장근로에 해당**
- 법정공휴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대체 불가**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 **소정근로일 적용 가능**



주요 관련 법률 Check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이하 생략)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중략)-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근무하지 않을 경우, 임금처리

☑️ 소정근무일인 경우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

☑️ 유급 주휴일인 경우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됨

☑️ 비번일 또는 무급 휴(무)일인 경우

대통령 선거일이 무급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 없음 → **무급 처리 가능**

근무하는 경우, 임금처리

☑️ 휴일근로에 해당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일의 사전 대체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사전 대체 가능**함

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2022년 3월 9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가 됨 → **휴일 가산 적용 X**



잠깐! 휴일의 사전 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 비번일 또는 휴무일과 대체는 불가)

적법한 휴일의 사전 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원래의 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기타 사항 (1/2)

☑ 교대근로로 익일까지 업무하는 경우

대통령 선고일 전날인 **3월 8일(화)**에 근무하여 익일까지 업무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은 모두 3월 8일(화)의 근로로 보아 소정근로일로 처리 → **휴일 가산 적용 X**

마찬가지로 **3월 9일(수)** 근무하여 익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전체 시간 모두 휴일근로로 보아야 함 → **휴일 가산 적용 O**

※ 8시간 이후 연장근무는 별도 가산 필요

☑ 연차유급휴가와 상계 가능 여부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에 대한 휴식을 보장할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법정 휴일로 지정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은 **연차유급휴가 상계 처리 불가**

기타 사항 (2/2)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대통령 선거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지 않음

→ **정상 근로일(휴일 적용 X)**

단,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 보장 필요 → **공민권 행사 시간은 유급 처리**



근로기준법 제 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공민권 행사의 직접적인 시간을 포함한 행사에 필요한 왕복 이동시간, 준비의 시간도 포함



뉴스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달에도 유익한
노무 잡학지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